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8
----------	-----

제출년월일, : 199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의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등록 재산의 심사와 결과 처리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 (안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 4명의 위원은 도 의회의원 2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나. 위원회의 기능 (안제3조)

-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등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안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1차 연임 가능)
- 위 2년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재임기간, 소속 공무원은 재직중인 기간
- 결원의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 근거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

□ 붙임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2. 관련법규 발체 1부
3. 조례 준칙 시달 공문 사본 1부
4. 소요 예산 내역 1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2.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명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㉓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 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간사등) 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㉒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 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발 체

0 공직자윤리법 (부분발체)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1항 후단의 결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 4호 생략

5.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소속공무원·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관한 사항

6 ~ 8호 생략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및 심사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1 ~ 5호 생략

6. 서울특별시·직할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직할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선 문	F A X	전화번호 1581
	연월일 13. 7. 22	내. 자. 구. 계. 회 H 003

무

부

우 110-760 / 용문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 전화 731-2130 / 전송 2991

문서번호 감사 12145-340
시행일자 1993. 7. 22 (3 년)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감사관(실장, 담당관)

선 결	무지다	후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3. 7. 22		결	
수 번호	1920	재 공		
처 리 과		람		
달 당 자				

제목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 시달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귀 시·도 및 산하 시·군·구 조례 제정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첨 부 1.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 1부
2. ○○시·군·구(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칙 1부. 끝.

내 무 부 장

수신처 : 나 01~06, 10~18



〇〇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〇〇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도지사)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〇〇시(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〇〇시(도)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〇〇시(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〇〇시(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도)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도지사)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소요 예산 산출 내역

위원수당 : 30,000원 × 7인 × 6회 = 1,260,000원

위원조사여비 : 25,000원 × 4인 × 10회 = 1,000,000원

비품 및 수용비 : . 이종캐비넷 또는 화일링 캐비넷

80,000원 × 2대 = 160,000원

. 등록대상재산신고서등 23종 유인 : 2,000,000원

. 기타 복사기, 워드등 비품 및 책상등은 특별확인반이 사용

. 하던것 사용